

경운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62조 및 학교법인 승선학원 정관 제6장 제2절에 의하여 경운대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의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적정한 신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학교법인 승선학원에 교원징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임명(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경운대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과 외부위원 중에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위촉)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호선 전 최초의 회의는 총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운대학교 직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3조(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호선에 따른 미선출 상태에서의 회의 또는, 부재시 회의는 총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가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인정되어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될 수 있도록 이 사장에게 임시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의결 요구 및 통지) ① 교원의 임면권자(제척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서 다음 각호

에 해당할 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및 근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 징계요구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서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3.>

제7조(시효) 징계의 의결요구는 정관 제68조에 따른다.

제8조(진상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7할을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4할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10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조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전문개정 2020.01.23.]

②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는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사유를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징계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의2(징계기준) 「정관」 제67조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제2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1.23.]

② 교원의 징계기준 중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신설한다.

제10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로 신설한다. [본조신설 2020.01.23.]

제10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① 「정관」 제67조의3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1.23.]

② 징계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로 신설한다.

제11조(보고)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징계에 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3.>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기타규정을 준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0.0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6.27.>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이전에 송선학원 「정관」 개정 시행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

부 칙 <2020.01.23.>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비위의 유형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학생·학부모 등 직무관련자, 직무와 관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임-정직			파면-해임-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했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정직	파면-해임-정직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파면-해임			파면
<p>비고: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제10조의3 관련)

업무의 성질		업무 관련도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근 상급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 고 감 독 자 (결재권자)
학교 운영에 관한 결정사항	중요 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반복 업무	중요 사항		1	2	3	4
	경미한 사항		1	2	3	-
단독 행위			1	2	-	-

비고: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 [별표 3]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제10조의4 관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경되는 징계
과면	해임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별지 제1호 서식】

교원징계의결요구서(제6조 제2항관련)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징계종류						
징계사유						
요구자의 의 견						
첨부서류	1. 징계혐의자 이력서 2. 징계혐의자 근무성적표 3. 징계혐의사실 입증서류 4. 기타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요구자 직위 : 성 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경운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p>						

【별지 제1호의2 서식】

징계사유 설명서(제6조 제2항관련)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 소					
징계의 종류 및 양						
징계사유						
요구자의 의견						
<p>송선학원 「정관」 제6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설명서를 송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법인송선학원이사장 ○ ○ ○ (직인)</p>						

【별지 제2호 서식】

징계의결서(제10조 제2항관련)

<p>개회일시</p>			<p>개회장소</p>	
<p>징계혐의자 인적사항</p>	<p>소속</p>	<p>직급</p>		<p>성명</p>
<p>의결주문</p>				
<p>이 유</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징계 의결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경운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50px;">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p> <p style="text-align: left; padding-left: 50px;">학교법인송선학원이사장 귀하</p>				

【별지 제3호 서식】

징계결정서(제10조 제4항관련)

소 속	직 급	성 명
주문		
이유		
<p data-bbox="555 1518 991 1554">위와 같이 징계 결정되었음을 통지함.</p> <p data-bbox="683 1608 863 1644">년 월 일</p> <p data-bbox="384 1832 1145 1877">학교법인 송선학원 이사장 성명 (직인)</p>		